

“사의표명 거둬주세요”

월하종정 총무원대표단 30분 면담 내용

조계종 종정사표와 관련 지난 17일 통도사 정변전에서 월하스님과 원로회의 총무원 총회 등 3 기간 대표가 만났다. 이날 분위기를 관계자들의 전언을 통해 듣는다. <편집자 주>



◇지난 10일 원로회의에 사표를 제출했던 월하스님을 17일 종단 대표단이 통도사로 방문 시의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지난 17일 조계종 종정 월하스님이 주석하는 통도사 정변전. 면담 예정시간 5분을 앞두고 원로회의 부의장 백익삼님을 비롯 원로의원 도원, 도경, 정하 스님, 종회 의장 설정, 기획실장 성광, 사회부장 능관, 호법부장 해담 스님 등 10여명 스님이 정변전에 모습을 보였다. 스님들은 곧바로 월하스님을 친견했으며 긴장속에 면담이 30여 분간 비공개로 진행됐다.

종정 “원로회의서 결정할 일” 총무원 원만해결 가능성 시사

월하: 내가 그만두려는 것은 현 집행부에 대한 불만 때문이 아닙니다. 종정에 취임하면서 1년간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사표를 낸 것이지요.
백익삼: 나라가 어려운 가운데 종단이 겨우 안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어려운 상황입니다. 건강도 좋지 않고 종도를 바탕으로 고려해서 사표를 거둬 주십시오.(종정사표서를 월하스님 책상위에 꺼내 놓음)
월하: 내 입장은 변함 없습니다. 사표는 이미 제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원로스님 가운데 종정할 스님들이 많습니다. 보다 많은 원로스님들이 종정 한번 하는 것도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설정: 종단의 안정을 위해서 사표를 철회해 주십시오. 이는 대중들의 뜻입니다.
월하: 내가 결재할 사항이 없기 때문에 종단의 안정에는 크게 상관이 없습니다.
해담: 결재의 입장은 아니지만 종정스님의 위치는 한국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지대합니다. 이번 각

언론의 관심을 비추어 보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사표서를 거두어 주십시오.
도경·도원: 대중의 뜻이 이릅니다. 사표를 거둬 주십시오.
월하: 사표를 수리하고 안하는 것은 원로의원스님들이 할 일이 아니겠습니까. 알았으니가 일어납니다.(일어나려고 하는데)
해담: 종무보고 드릴 것이 있습니다. (장계, 승려분 한신고미필자에 대해 보고하자 종정스님은 사할 땅은 절대로 팔면 안된다는 등 몇가지 사항을 지시했다)
성광: 발의된 전통사찰보존법 개정안이 이번 국회 회기내에 통과가 될 것 같습니다.
월하: 꼭 통과되도록 해라.
월하스님은 이후 백익삼부장, 청하 부방장님과 별도의 대화를 가졌다. 총무원은 종정스님이 “사퇴철회를 받아들인 것으로 이해한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 불교관계법령 개정안의 국회통과 건으로 부득이 참석 못한 것으로 알려진 총무원장 월주스님은 금명간 통도사로 종정스님을 예방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중앙종회 의장단·상임분과위원장들은 21일 오전 10시 종회차원에서 월하스님을 예방했다.

통도사=김종근 기자

국회통과 ‘전사법’ 어떻게 달라지나

신설	제1조 6항: “전통사찰보존구역”이라 함은 전통사찰의 경내지 가운데 전통사찰의 보호와 존엄 및 종지보존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제9조의 2(전통사찰보존구역) 전통사찰보존구역 안에서는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불교목적 이외의 목적을 위한 건조물 설치 및 변경행위 2. 영업행위
	제12조의 2(청문)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을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미리 당해 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다만 당해처분의 상대방 또는 그 대리인이 정당한 사유없이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의견진술의 기회를 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제3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1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역사적 의의와 문화적 가치를 가진 사찰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2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통사찰을 지정할 때에는 이를 고시하고 당해 사찰의 주지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3항: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4항: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사항) 1항: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제2호의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의 승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1. 경내에서의 건조물의 신축 증축 개축 또는 폐지 제9조(경내지의 보호) 1항: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의한 수용·사용 또는 제한의 처분을 하고자 하는 자는 사전에 문화체육부장관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2항: 문화체육부장관은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동의를 하고자 할 때에는 전통사찰의 소속대표단체의 대표자와 협의를 하여야 한다.
	제3조(전통사찰의 등록) 1항: 역사적 의의를 가진 사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은 문화체육부에 등록하여야 한다. 2항: 제 1항의 등록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허가사항) 1항: 전통사찰의 주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자 할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경내지의 건조물 또는 경내지 사용의 폐지 제9조(경내지 보호) 전통사찰의 경내지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구역안에서는 영업행위를 할 수 없다. 다만, 불교목적에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영업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삭제	제4조(주지의 신고등) 전통사찰의 주지는 그 취임하는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문화체육부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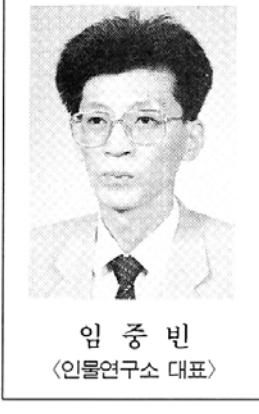
시론

대통령의 아들

대통령의 아들이라는 신분만으로 요직인사에 개입하고, 국가기관을 떠주무르듯 하며, 국고금이나 다름없는 자원의 이권을 쥔다는 의혹이 제기되는 가운데, 국민을 열렬하게 하는 미시여구의 사과문으로 이제와서 의혹을 덜으려 한다면 너무도 분수를 모르는 처사다.

반야지혜로 해법 찾자

나라꼴이 말이 아닌 이 국가적 치욕을 씻으려만 장본인뿐만 아니라 권력지향 특혜지향의 주변부터 말끔히 청소되어야 하고, 이에 앞서 벼락출세나 꿈꾸는 땃땃지 못한 마음의 구름부터 걷어내는 반야의 지혜를 기다리는 데서 해법의 실마리가 찾아지리라 믿는다. 사조직을 운영하는 가운데 정계와 언론계, 관계와 재계를 막후에서 주름잡으며 기세등등 했다고 알려진 김현철 시대가 세상에 노출되면서 국민의 심판만 남게 되었다.



임 중 빈 (인물연구소 대표)

돌이켜볼때 역대 대통령의 자녀 그 누구도 해법 수 없는 신출귀몰한 김현철씨의 등장은 대통령 후보였던 아버지의 특표활동에서 비롯되었다는 분석이다. 애당초 아버지의 마음에 드는 아들이기에 지금까지 모든 암약이 묵인되어 올 수 있지 않았겠느냐는 소리들이다.

뒤늦게 검찰이 본격적인 수사에 임하지 아니할 수 없게 되어 있지만 과연 현재제에서 김현철스캔들이 얼마나 중증될지 우려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그러함에도 전비(前罪) 의혹에 대해 충분히 뒤늦은 뒤에 평소 우수한 사고력과 뛰어난 순발력을 지닌 김현철에게도 국민복을 위해서 크게 쓰여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그때는 지난날 아버지 그늘아래 깃들여 살던 인물로서가 아니라 땀땀한 공직에서 역량을 아낌없이 발휘함으로써 국민 앞에 역사 앞에 진 빛을 보상하는 길이 열릴 수 있을지 모른다.

오늘에 와서 문민정부를 내세웠던 김영삼 정권은 민심에서 많이 일탈된 권력체제로 비쳐지고 있다. 여전히 사죄에 사죄를 거듭하면서 심지어 아들을 국민심판대에 내놓기까지 해야하는 대통령의 정황이 나라의 앞날을 걱정스럽게 한다. 임기 1년을 앞두고 ‘유시유종’에 걸맞게 도덕성을 수습할 것인가 국민은 회항을 지켜보고 있다.

‘참회의 삶’을 살자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 환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있어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고 있는지 그 누구라도 평소 알거나 모르는 사이에 작든 큰 죄를 짓고 있을 수 없는 노릇이다. 이유는 너무도 지명하다. 무심코 길을 걷고 있다보면 자신도 미처 모르는 사이에 디디는 발자국 밑에는 열심히 살고 있는 개미나 벌레들이 밟혀 목숨을 잃는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이다. 이처럼 부지불식간에 짓는 죄로 인해 특히 불교에서는 참회의 정신과 의식에 매우 중요한 의미를 두고 있다.

불교를 믿고자 하면, 누구라도 먼저 수계의식을 통해 입문하게 된다. 부처님의 계법을 받아서 마음으로 새기고 그 계법

에 의지해 살아가겠다는 맹서를 하는 것이다. 만일 계를 받지 않았다면, 아무리 불법이 좋으며 오랫동안 절에 다니거나, 불공을 드리고 기도를 한다 하더라도 진정한 불제자는 아니다. 그저 취향이 짙을

연비하는 마음 늘 챙기자

찾는 일인 것이고, 단순히 기도꾼이고 불공꾼인 것이다.

이처럼 수계는 불자로 귀의하는 첫 단계이며 막중한 책무가 수반된 의식이다. 이 수계 의식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가 바로 참회연비하는 순서이다.

참회연비는 더럽고 독한 것을 담고 있던 그릇에 깨끗하고 새로운 것을 담으려면 먼저 담겨있던 독한 것을 말끔히 비워 버려야 한다. 깨끗하게 씻은 다음에 좋은 새것을 담아야 그것이 온전하다. 불교에 귀의하는 것도 마찬가지로 이치이다.

이제까지 알게 또 모르게 지어온 많은 죄업을 남김없이 모두 진실로 참회한 뒤에 계를 받아야 한다. 따라서 연비의식은 참회계와 참회진언을 일심으로 외우면서 팔에다 작은 실지를 태우거나 또는 향불을 받아든다. 팔뚝 위에 불을 놓거나 향불을 받아드는 의식에는 깊은 의미가 크다. 그것은 비록 팔위에서 아주 작지만 심지가 타면서 따끔한 것을 느끼며 참는 한 생각을 통해서 오랜 옛적부터 쌓아온 많은 업장을 모두 깨끗이 소멸하고자 하는 깊은 도리가 있다.

비유를 들어 보자. 아무리 산더미 같이 쌓아올린 잡동사니라도 그것을 하나 하나씩 치우려면 어렵다. 그렇지만 불을 한번 들이대면 그 순간 순식간에 활활 타서 되고자 하면 진정한 참회부터 해안다. 또한 참회의 삶은 지계에서 비롯된다. <스님·동국대 명예교수>

송광사 가사불사 모연문

송광사 가사불사 동참안내

- 가사 1벌을 한사람 이름으로 동참하거나
- 가사 1벌을 전 가족 이름으로 동참하여도 됩니다.
- 부득이 가사 한벌을 동참할수 없는 형편이면 동참 성금은 액수에 상관없습니다.
- 자세한 사항은 아래 문의처로 연락 하시기 바랍니다.

■ 동참금

- ▷ 가사 한 벌 동참금 30만원
- ▷ 가사불사 동참성금 : 액수에 상관 없음.

■ 온라인번호

- ▷ 국민은행 : 551-01-0470-485 (예금주 송광사)
- ▷ 우 체 국 : 501676-0014699 (예금주 송광사)
- ▷ 농 협 : 615107-008814 (예금주 송광사)

■ 문의처

- 본사 : 송광사총무소 (0661)755-0107~9
- 재무실/0661)755-5320
- 지역 : 서울분원 법원사/02)733-5322
- 대구분원 관음사/053)421-3700
- 부산분원 관음사/051)205-0069
- 여수분원 보현사/0632)62-5145
- 송광사 각 말사회
- 전국불일회 각지회
- 원주실/0661)755-5301
- 광주분원 원각사/062)223-3168
- 순천분원 대승사/061)744-4902
- 부산분원 보덕사/051)518-7790
- 광양분원 보광사/0667)763-1192

불기 2541년 3월